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28일, 송옥주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6.1.13.)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송옥주 의원)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 인력 위주의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계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논농업의 경우 기계화율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농가 중 0.5ha 미만 소농이 5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기계를 임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기에 농업기계를 안전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등 교육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개정안은 상기 ‘농업기계 전문교육’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의 교육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규정함

으로써 농업기계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농업인들의 농업 기계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농촌진흥법」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에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 상으로도 이미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등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